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(제19조의4제3항 관련)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9조의4제1항 중 “금액으”를 “금액의 2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 
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I. 일반기준

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II.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.

II. 과징금 조정 기준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

가. 법 제3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.
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

가.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.

나. 가.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의4(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)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| 제19조의4(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금액의<br>2배---.  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|